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6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6일
발 의 자 : 정진철 의원 (1명)
찬 성 자 : 권영희, 채인목, 김정태,
임종국, 이호대, 이태성,
강동길, 이정인, 정재웅,
이승미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하여 5대 공사 및 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 공사 및 공단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함께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자체적인 감사 조직을 통해 해당 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은 업무상, 인사상 각종 비리가 발생하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저하와 함께 공기업 등의 방만 운영이 문제시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 5대 공사 및 공단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공기업의 투명운영과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시장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회계감사인은 결산서 작성 후 1개월 내에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공사·공단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조)
- 라. 시장은 공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처리를 보다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공사·공단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감사인 지정)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공단의 회계감사인을 지정한다.

제3조(회계감사) 회계감사인은 공사·공단의 결산서 작성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사·공단에 제출한다.

제4조(결산서의 보고·승인) 공사·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 완료 후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의회 보고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